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윤호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766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윤호중의원안)	3

I. 개요

1. 윤호중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76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호중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 23.

(3) 회 부 일 : 2025. 1. 2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들어 경제적 수익뿐 아니라 공익적 가치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한 사회투자는 확대되고 있고, 게이트 재단 등 글로벌 우수 공익법인이 이 분야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2021년 기준 국내 사회적금융 규모는 6,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나, 비영리 민간기금 용자는 2% 정도에 불과하여 활성화가 필요함. 미국의 경우 1960년대부터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한 투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공익목적 투자를 촉진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공익목적 투자에 대한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고, 동 투자의 가능 여부도 주무관청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등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임.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공익목적 투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규정하고, 총출연재산의 의무 지출에 포함하며,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익목적 투자를 주식취득 비율 제한의 예외로 두어
국내 공익목적 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윤호중의원안)

현 행	개정안
□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제48조) ○ 원칙: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 사후관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①,③) 또는 가산세(②) 부과 ① 출연받은 재산을 <u>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u> ② <u>직접 공익목적사업(소득세 혹은 법인세 과세대상 사업은 제외)에 사용한 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u> ③ 공익법인등이 동일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거나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경우 <u><단서추가></u> * 비율(상증법 제16조제2항제2호) - 일반: 10%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일정요건(특수관계인 이사비율, 자기내부거래 금지 등)을 미충족: 5% - 의결권 미행사를 정관에 규정한 자선· 장학·사회복지 목적 법인: 20%	□ 공익목적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 ○ 원칙: (현행과 같음) ○ 사후관리: (현행과 같음) ① 출연받은 재산을 <u>직접 공익목적사업 등(공익목적투자* 포함)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u> *공익목적투자: 공익목적사업을 위하여 ① 공익법인등에 대출하는 것, ② 중소기업자에 주식 또는 지분 투자 및 대출하는 것, ③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것 ② <u>직접 공익목적사업(소득세 혹은 법인세 과세대상 사업은 제외)에 사용한 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u> ③ 공익법인등이 동일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5%(10%, 20%)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거나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경우 <u>다만, 공익목적투자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함</u>

* 윤호중의원안 2025. 1. 23. 제출(의안번호 7766)

□ 개정안은 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투자(사회적기업 등에 대출, 출자하는 등으로 자본을 지원하는 사회적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공익목적투자에 대하여는 현행법상의 일부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구체적으로는 살펴보면, “공익목적투자”를 “공익목적사업을 위하여 공익법인등에 대출하는 것, 중소기업자에 주식 또는 지분 투자 및 대출하는 것,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공익목적투자의 경우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공익목적투자로 취득한 주식등은 공익법인등의 지분 보유한도 제한의 예외로 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공익법인은 「민법」 제32조¹⁾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 학자금·장학금·연구비의 보조, 학술, 자선 등 사회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는데, 세법²⁾에서는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아래의 사업을 하는 자를 ‘공익법인등’으로 정의하여 종교단체·공

1)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익단체 등 법인이 아닌 단체 등도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익법인등의 범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아래 사업을 하는 자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 이러한 공익법인등이 수행하는 사회적 기능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 유증하거나 출연하는 재산, 공익법인등이 증여받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³⁾ 대신,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

조세혜택을 받은 공익법인등이 그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용,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결산서류 공시, 전용계좌 개설·사용 등 관리규정⁴⁾을 두고 있고, 공익법인등을 통한 기업 우회지배⁵⁾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 등의 지분 취득·보유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 중 개정안과 관련된 규정을 구체적으로는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①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용)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됨.⁶⁾

② (출연재산의 일정비율 의무지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100분의 1,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 목적 공익법인등으로서 발행

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 제50조의2, 제50조의3

5) 기업의 대주주나 총수 일가가 직접적으로 기업을 지배하지 않고, 공익법인(재단 등)을 매개로 하여 기업의 지배력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행위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는 가산세가 부과됨.⁷⁾

③ (공익법인등의 지분 보유한도 제한)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의 합이 해당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일정비율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됨.⁹⁾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

7. 다음 각 목의 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100분의1(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거나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한 경우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1)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할 것

나. 가목 외의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8항부터 제21항까지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제2호

2. 비율: 100분의 1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100분의 20

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2)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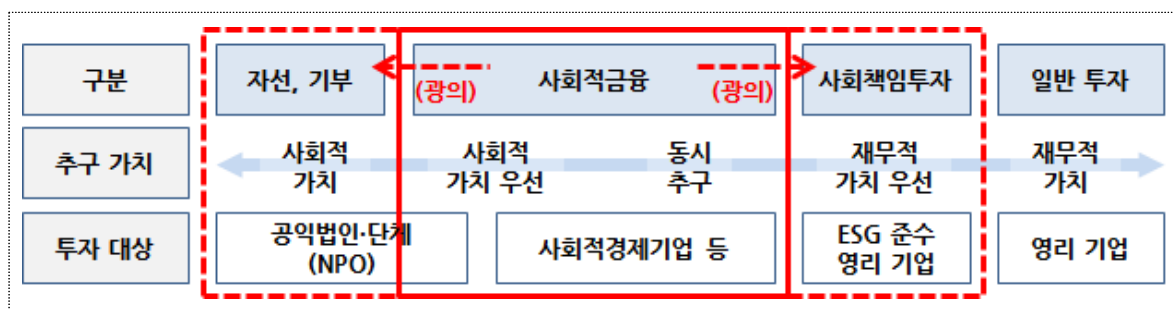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 100분의 5

다.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익법인등: 100분의 5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항에서 같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

- 한편, 개정안은 “공익목적사업을 위하여 공익법인등에 대출하거나 중소기업자에 주식 또는 지분 투자, 대출하는 경우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등”을 “공익목적투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 이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¹⁰⁾ 및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적경제활동¹¹⁾에 투자·융자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 좁은 의미의 사회적금융(Social Finance)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됨.
- 금융위원회는 사회적금융은 좁은 의미에서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투자·융자·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을, 넓은 의미에서는 보조금(Grant)과 자선행위(Philanthropy)도 포함하거나 사회적 가치를 넓게 적용하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우수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책임투자(SRI)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¹²⁾.



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10)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11) 장애인용품 등 공공성이 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활동

12) 금융위원회,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2021. 12. 8.

한 국제단체¹³⁾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세계 사회투자 규모는 1조 1,640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건수 비중으로 공익법인의 투자 건수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금액 비중은 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반면, 우리나라의 사회적금융은 정부·공공재원을 중심으로 주로 중소기업·서민 정책금융¹⁴⁾ 지원체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민간재원을 활용한 자발적인 사회적금융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2021년 기준 국내 사회적금융 규모는 6,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나 비영리 민간기금 용자는 135억원 수준으로 2% 정도에 불과하다는 국내 한 단체¹⁵⁾의 조사결과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공익법인등 민간부문에 의한 사회적금융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현행법상 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투자를 어렵게 하는 규제적 요인을 개선함으로써 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재 공익목적의 투자·용자가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당해 투자·용자가 공익목적사업인지 혹은 수익용사업인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고, 동 투자·용자로 인해 배당 혹은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의무지출 비율 계산 시 지출에 산입되지 않으며, 공익법인등의 지분 보유한도 제한 규정으로 인해 출자 방식

13) 2021 글로벌 사회적 투자자 네트워크(GIIN)

14) 서민금융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투자 등

15) 사회적금융허브(<https://socialfinance.kr/about/finance>)

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¹⁶⁾,

개정안은 공익목적투자가 공익목적사업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법인세 혹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의무지출 비율 계산 시 지출에 산입되도록 하며, 공익목적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지분 보유한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다양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을 투자·융자 등으로 지원하게 된다면, 빈곤·불평등·환경오염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일정 한계가 있는 공공부문의 역할을 민간부문이 보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규제완화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가령, 공익목적투자의 취지에 맞지 않게 높은 이윤이나 영리를 우선적으로 추구할 가능성, 투자에 따른 원금 손실 등으로 인한 공익사업 재원의 안정성 저하 우려, 지분 보유한도 제한 미적용에 따른 기업 우회지배 행태)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임.

기획재정부는 현재도 공익목적투자를 개별적으로 검토¹⁷⁾하여 공익목적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배당 수익이 발생하는 투자를 공익목적사업으로 일률적 규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16) 「공익법인의 공익목적투자 활성화 제도 개선안」, 이회숙, 2024.8.20.

「공익법인 사회투자 제도개선 토론회」, 국회의원 윤호중·사회적금융포럼 등 주최, 2024. 10. 31.

17) (예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저리대출사업은 공익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ESG 실천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는 공익사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문 의 처

02)6788-5161
